

국내의 비식별화 현황 분석을 통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제언

강혜영*, 권헌영**

요약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시대에 데이터가 사회와 경제 전반의 핵심자원이 되어 ‘데이터 중심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대량 데이터의 디지털화는 필수적이 되었고, 더불어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쉽게 수집, 저장, 복제, 분석이 가능해졌다. 전통적인 개인정보의 개념이 변화되고,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우리나라 등 세계 각국은 비식별화, 익명화, 가명화 개념과 규정을 신설하였다. 각국의 비식별화 정책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구분 혹은 혼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각국의 정책 현황을 조사,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비식별화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적 조화를 이루어 디지털 경제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Policy Suggestions on Personal Data Utilization by Analyz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identification Policy

Hye-young Kang*, Hun-yeong Kwon**

ABSTRACT

In the era of Internet of Thing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t has become essential to digitize mass data, which leads to ‘data-driven economy’. Digitalized personal data can be easily collected, stored, duplicated and analyzed. As ICT technology is evolving, the concept of traditional personal data has changed.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Japan, Korea and many countries have introduced new concepts of personal data into law such as de-identification, anonymization, and pseudonymization to protect and utilize digitalized personal information. These concepts are distinguishable depending on countries. Therefore, this study will be done by researching and analyzing personal data related policies of several countries. Based on this study, this paper will suggest policy on de-identification to draw the right balance between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use, which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economy.

Key words : Personal Data Protection, De-identification, Anonymisation, Pseudonymisation, Data Economy,

접수일(2018년 11월 19일), 수정일(1차: 2018년 12월 27일),
게재확정일(2018년 12월 30일)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석사(주저자)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교신저자)

1. 서 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시대는 데이터가 사회와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원동력이 되는 새로운 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하여 ‘데이터 중심 경제(data-driven economy)’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1].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데이터 혁명시대이며, 데이터의 디지털 전환 혁신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활용성을 높이고 산업경쟁력을 창출하는 것이다[2]. 2018년 8월 대통령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선언한 바 있다[3]. 이후 같은 해 10월 에스토니아의 ‘탈린 디지털 서밋’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16개 디지털 선도국과 함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디지털 경제·인공지능 시대 준비를 논의하였다[4]. 이렇게 국내외 정부의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경제발전 에 대한 강한 의지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수요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활용에서 어려움과 쟁점은 무엇인가?

데이터 활용의 수요와 공급 사이에서 개인정보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호가 상충하게 되고, 어떻게 조화롭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것인가가 논쟁의 중심에 있다[5]. 개인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결책으로써 비식별 정책이 도입되었다. 미국,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이하 EU), 일본 등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비식별 정보를 활용하여 의료, 유통, 금융 등 산업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중심 사회로의 변화가 오면서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법적 개념의 변화와 개인정보와 관련된 비식별화(de-identification), 익명화(anonymization), 가명화(pseudonymisation)와 같은 새로운 유사 개념의 등장을 살펴보고자한다. 미국, 유럽연합(EU, 이하 EU), 일본, 우리나라의 비식별화에 대한 이해와 개별 정책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개념 변화

2.1 전통적 개인정보의 법적 개념

개인정보 보호는 서구의 프라이버시 개념에서 그 연원(淵源)을 두고 사생활적 이익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프라이버시 또는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의 법적 관념은 1880년대 ‘홀로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라는 의미로 시작되고 발전하여 “개인이 타인에 의하여 지각되지 않는 존재상태, 생활 상태”를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등이 모두 프라이버시 개념에 포함되는데, 개인정보 보호는 프라이버시의 한 부분으로 ‘타인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와 관련하여’ 당해 개인정보의 주체가 가지는 이익을 나타내는 개념이다[6].

2.2 새로운 개인정보 유사 개념의 제도화

2.2.1 필요성

컴퓨팅 및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변화가 시작되었고, 개인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들은 가상공간 또는 전자화 된 네트워크 환경 속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개인정보는 필연적으로 디지털화(digitalization)되었다. 디지털화된 정보는 영구적이며, 누구나 복제 가능하고, 정보의 수정, 조작, 저장도 쉬워질 뿐만 아니라, 원본과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복제물을 재생산 할 수 있게 되었다[6]. 발전된 디지털 저장 매체들을 통해 개인정보의 해킹과 변조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부터 주요 카드 3사의 정보유출 등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7]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의 초 연결 사회에서 대량의 개인정보의 수집·저장·복제·분석 등이 빠른 속도로 처리·유통의 대상이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디지털화된 개인정보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을 통해 금융, 의료, 제조, 치안 등 일상활동 전 영역에서 그 의존도와 활용이 커지고 있다[8].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는 이전과는 다른 개인정보의 개념 정

의와 개인정보 보호 범위 등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게 되었다.

2.2.2 유사 개념의 내용

디지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2-3년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에 대한 정책을 신설하고 기존법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각 나라마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문제 접근과 해결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활용 가능한 정보로 간주한다. 특정 정보로부터 ‘개인 식별 가능성’을 제거하는 조치와 과정을 비식별화로 정의하며, 비식별화와 익명화의 개념이 혼재되어 동의어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ITU-T의 비식별 처리 표준 개발에 대한 논의에 따르면 ‘익명화’는 식별 데이터 집합과 개인 데이터 주체 간의 연관성을 제거하는 프로세스이고, ‘가명화’는 식별 정보를 별명으로 대체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적용 되는 프로세스이다. ‘비식별화’는 일련의 식별 데이터와 개인 데이터 주체 간의 연관성을 제거하는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이다[9].

ITU-T의 정의에 추가적으로 해외 사례를 보면 비식별화, 익명화에 대한 세 가지 견해를 발견할 수 있다. 비식별화와 익명화 두 가지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 비식별화에 비해 재식별이 어려운 경우를 익명화로 보는 경우, 마지막으로 재식별이 절대로 불가능한 비식별화만 익명화로 간주한다.

외국문헌을 보면, 국가나 지역별로 비식별화 또는 익명화 중에 한 가지 용어를 사용하는데 미국의 경우는 주로 비식별화를, 유럽과 일본은 주로 익명화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그 의미와 기능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나라마다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국내의 비식별화 정책 분석

3.1 미국

미국에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연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사안별 또는 분야별 영역에

서 별도의 법령이나 판례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의료정보나 신용정보와 같이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들만을 규율하는 법령들이 제정되었다[10].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법(CPBRA: 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Act)에 비식별 데이터를 정의하고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없도록 조치한 비식별 데이터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11]. 의료개인정보보호법(HIPP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에 따라 제정된 개인의 의료정보 보호와 이용을 위한 규칙(HIPAA privacy rule)은 개인건강정보의 이용 및 공개와 관련하여 비식별 조치된 의료정보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하였다[12].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및 제공 가능하며 의료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비식별화 조치 방법으로써 ‘전문가가 식별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비식별 조치를 직접 실행하는 방식’과 이름, 주소정보, 개인과 직접 관련된 날짜 정보 등, 지정된 18가지 식별자를 제거한 경우에 당면 면책을 인정하는 ‘피난처 방식(safer harbor method)’을 사용하고 있다[13].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 이하 FTC)는 2012년 권고문(protecting consumer privacy in an Era of Rapid Change)을 발표하여 공공 및 민간에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및 규정을 제시했다. 이 보호체계는 특정 개인, 컴퓨터 및 기타 기기에 합리적으로 연결 될 수 있는 (reasonably linked)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모든 상업적 실체에 대하여 적용된다 [14][15]. FTC는 ① 업계가 비식별화 기술·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반드시 조치해야 하고, ② 자신의 정보가 비식별화 될 수 있다는 사실과 재식별하지 않을 것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하였으며, ③ 제3자에게 비식별화 데이터 제공 시 계약상에 재식별 방지를 요구하도록 하였다[16].

금융정보, 소비자 신용정보, 부채정보, 피보험자 건강정보 등이 해당되며, 규제기관이 제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체계는 구체적으로 실행된다. EU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보다 더 높은 부분도 있고, 더 낮은 보호수준의 경우도 있다[2].

3.2 EU GDPR

EU는 2016년 5월 회원국 간의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처리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관련 권리 강화를 위해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을 제정하였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이하 DPD) 법 형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EU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범의 효력을 가지는 GDPR이 탄생되었다[17]. EU가 DPD에 이어 GDPR과 같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통일된 제도·법 체계를 가지는 점은 분야별 개별 관련법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미국과는 차이를 보인다.

기존의 DPD에 명시된 ‘익명화 정보’와 ‘가명 처리된 정보’는 지침으로서 강제성이 없었으나, GDPR에서는 정보의 익명처리와 구분하여 가명정보 규정을 명문화하였다[18]. 정보의 비식별화를 위한 안전한 기술적 조치로 가명화를 인정하였다. 가명화 된 정보는 비식별 정보로서 목적 외 활용이 가능하지만, 재식별 가능성을 인정하여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적용 대상이다. 별도로 보관하는 추가 정보와 결합하여 재식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식별이 불가능한 익명화와 구분된다.

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정보의 가명화를 의무로 제안하고 이에 대해 혜택을 제공한다. 가명화 처리가 된 정보라도 GDPR의 적용범위에 해당된다.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 자연인의 정보가 되는 경우 그 정보는 식별 할 수 있는 자연인에 대한 정보로 간주한다. 또한, 가명화가 다른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19].

EU는 가명정보 개념을 통해 빅데이터의 활용을 장려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융통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다.

3.3 일본

일본은 2003년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한 후, 2015년 전면 개정하여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민간영역만 규율하여 하나의 법률로 공공과 민간을 규율하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안점은 그동안 개인정보의 범위가 모호하여 데이터 활용이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고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익명가공정보’(법 제2

조 제9항)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익명가공정보는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얻어진 것으로 식별 가능한 상태로 복원 할 수 없도록 조치된 정보를 말한다. 비식별화된 정보는 복원 불가능을 전제로 하여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이외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20]. 자유롭고 안전하게 정보가 이동될 수 있도록 익명가공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익명가공정보의 가공 방법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고, 익명가공정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하며, 재식별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복수의 익명가공정보를 조합하여 통계 정보를 작성하거나 익명가공정보를 개인과 관계없는 정보(기상 및 교통 정보 등)와 결합하여 통계적으로 경향을 분석하는 것은 허용되나 익명가공정보를 다른 정보와 대조하여 재식별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21].

일본의 ‘익명가공정보’가 EU GDPR 제4조(5)의 ‘가명화정보’에 해당되는 유사한 개념인 것 같다. 그러나, 그 법적규제는 미국법에 따라 ‘비식별 개인정보’와 같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이용이 가능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결국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다루고 있다.

3.4 한국

우리나라 정부는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2016년 7월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하여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해 ICT 융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22].

가이드라인은 사전검토,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 사후관리절차 총 4단계로 구성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비식별화 조치 및 그 사후 사용’에 대한 것으로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데이터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의 기법을 개별 또는 복합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재식별이 되지 않도록 필수적인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한다.

비식별화 조치방법 중에 가명처리의 세부 기술로써, k-익명성 모델은 GDPR에서의 익명화 방법론으로 분류될 수 있다. EU DPD는 익명화한 경우에는 본 지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서 안내하는 ‘비식별 조치’는 EU의 익명화와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가명정보의 활용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비식별 조치한 정보는 비개인

정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비식별화 정책의 대표적인 특징이자 지적 사항은 ‘가이드라인’으로서 법적 지위의 모호성이다. 가이드라인은 비식별 정보가 재식별이 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부과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식별가능성에 따라 개인정보의 적용범위가 무한정 확장 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식별 정보는 목적 외 활용이 가능한 것 같지만, 법률적으로는 목적 외 처리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미국 등과는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 가능한 요소를 정하여 불필요한 요소는 삭제하고 비식별화 검토사항은 전문가 검증도 거치도록 함으로써 명확성을 높이고 있다.

3.5 소결

대표적인 경제주체인 미국, EU 양 진영이 개인정보 규제에 대한 접근방법은 다르지만,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와 이에 부합한 제도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23]. 미국, EU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로써 비식별화를 도입하고 있다. 비식별화된 정보는 활용가능한 정보로 규정하고자 하는 의도는 동일하지만, 비식별 정보의 정의와 법적 지위는 다소 차이가 있다.

EU는 비식별 정보를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미국, 일본, 우리나라는 비식별 정보를 익명정보와 동일하게 간주하며, 비식별 조치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적용에서 제외 될 수 있다.

<표 1> 국가별 비식별화 제도

국가	활용가능한 비식별정보	재식별 가능성	정보보호 제도	비고
미국	비식별 조치된정보	인정	재식별되지 않은 경우 미적용 ¹⁾	개 별 법 및 가이드라인
EU	익명정보	없음	미적용	EU GDPR
	가명정보	인정	적용	
일본	익명 가공정보	금지	미적용 ²⁾	개인정보 보호법
한국	비식별 조치된정보	금지	미적용 ³⁾	가이드 라인

우리나라의 비식별 가이드라인은 미국과 EU의 제도를 절충적으로 수용한 일본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후 관리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비식별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한 점에서 ‘재식별 가능성’과 ‘위험성’을 인지한 적극적인 정책이지만, 사후 관리의 범위와 책임이 커질 수 있다.

4.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정책 제언

미국, EU 및 일본은 개인정보의 가치와 활용적 측면에서 법체계를 정비하여 익명정보 및 가명정보 등의 비식별화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는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정보와 비식별 조치에 대한 모호성이 존재한다. 이에 관련법·제도 정비와 비식별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여 데이터 활용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4.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

비식별 정책의 법적·정책적 의미와 지위를 확고하게 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에서 ‘개인정보의 활용’ 목적을 명시하여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관련 제도와 활성화도 도모한다. 현행법에서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정의하여 식별가능성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적용범위가 무한정으로 확장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다시 정의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정비와 더불어 비식별화 제도를 법제화 하여 비식별 정보 활용에 대한 법률 행위의 정 합성을 부여하고 정보주체를 보호하는 제도를 강화해야한다. 미국, 유럽,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보의 비식별화를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다루고 있어, ‘비식별 정보’에 대한 법적·정책적 의미와 지위가 모호

- 1) 비식별조치의 정의, 방법 등에 관해 개별법 및 가이드라인에서 제시
- 2) 익명가공정보의 정의와 관련 의무를 법에 명시
- 3) 비식별조치의 방법과 관련 의무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

한 상황이다. 이에 비식별 정보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비식별 활용 관련 법률행위의 정합성을 부여하고 정보주체를 보호하는 제도가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 개인정보와 개인 식별 관련 공공분야, 정보통신, 상거래, 금융·신용, 보건 관련 민간분야 등에 법이 거의 30여종에 달한다. 그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와 관련성이 가장 깊은 3대 법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이렇게 분산 되고 체계 없는 법제도와 통일성 없는 감독 체계 하에 개인정보는 물론 개인정보 활용까지 제약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7년 설립된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특별 권고안’을 2018년 5월 작성 완료하였다. 비식별화 된 개인정보 활용 정책 권고 방안과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와 가명정보의 개념을 구체화 하는 입법안 등을 마련하였다[24].

4.2 정보의 비식별 도입 방향 정립

현재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서 비식별 정보는 EU의 익명정보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정보의 활용 가능 범위가 다소 협소하고 경직된 상황이다. 또한, 비식별 정보가 재식별이 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정보 처리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비식별 정보의 완벽한 익명화를 요구할 경우, 비식별 정보로 인정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한정 될 가능성이 크고,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EU와 미국의 경우는 엄격한 요건 하에 재식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어서 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고 있는데, 완전한 익명화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정보의 식별이 경제적으로 과도한 비용과 시간 등이 필요한 경우에 비식별화 정보로 간주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정보의 비식별성을 중심으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정보 활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식별 정보에 대한 경직성을 완화하고 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식별 정보를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GDPR 방식처럼 가명정보 이용에 따른 정보보호 시스템과 처

별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진화로 완전한 익명화는 점점 어려워지고, 재식별 가능성이 존재한다. 재식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관리를 통해 비식별 정보는 익명정보와 별도로 정의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상황에 따라 비식별 여부를 판단하는 미국 방식보다는 법령으로 가명정보 제도를 도입하여 그에 부합하는 보호 시스템을 가지는 EU의 GDPR 방식이 우리현황에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식별화 제도로서 가명정보는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로 정의하고, 추가정보의 안전한 보관의 의무를 부여한다. 익명정보의 경우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자유로운 분석과 이용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식별화 제도 도입으로 정보 활용성이 커지게 되면 정보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개인 정보 침해 시 처벌을 강화하여 정보보호 관련 사후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2>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비교

	비식별화	재식별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적용
가명정보	○	○	○
익명정보	○	×	×

4.3 비식별화 정보의 목적 외 처리 확대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식별 정보는 목적 외 활용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법률적으로는 목적 외 처리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를 좀 더 유연하게 인정하고 가명정보를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한 정보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2018년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일부 개정 법률안 중에서 김규환의원 대표발의의 제안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정보를 추가로 사용하지 않고 특정 개인을 식별 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개정이 가능할 것이다 [24]. EU GDPR에서 정보의 가명처리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되며, 일본도 목적 외 활용에 관한 엄격한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수집 목적과 의도된 추가 처리 목적 간의 연관성, 개인정보 주체와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개인정보가 수집된 상황, 민감 정보 처리 여부, 추가 처리가 개인정보 주체에게 초래할 수 있는 결과 등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여러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최초 수집 목적과 추가 처리 목적이 양립 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목적 외 처리를 추가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를 위해 미국, EU, 일본과 우리나라가 비식별화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비식별 기술의 이용과 발전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비식별 제도를 개인정보 보호 제도권 내에 편입하여 정보보호를 강화 해야 할 것이다.

빅데이터 시대에 디지털화된 대량의 정보를 활용하여 경제 활성화에 대한 바람과 강한 의지는 2017년 구성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법·제도 개선과 규제완화로 가시화 되고 있다. 또한, 2018년 9월 ‘지역특화발전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규제프리존 내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후 2018년 11월에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가명정보 개념 도입 등에 관한 신용정보 관련 법 개정 국회의원 발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디지털화의 가속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는 더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도 국제적 수준과 흐름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제도와 비식별 정책의 개선에 국민적 합의와 의사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참고문헌

- [1]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 ‘데이터 이코노미’, 한스미디어, 2017.
- [2] 오승한,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연구”, 아주법학 제11권, 제4호, pp. 369-412, 2018.
- [3]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80831000282>
- [4] 보안뉴스,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3686&kind=2&search=title&find=%C7%E0%C1%A4%BE%C8%C0%FC%BA%CE+%C0%E5%B0%FC>
- [5] 심우민, “스마트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입법전략”, 언론과 법 제12권, 제2호, pp. 147-174, 2013.
- [6] 김진환, “개인정보 보호의 규범적 의의와 한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pp. 43-87, 2014.
- [7] 정기석, “금융사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방안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제14권 제4호, pp.109-116, 2014.
- [8] 김연수, “치안분야의 정보통신기술 활용방안 연구-빅데이터기반 치안수요분석과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융합보안 논문지, 제16권 제6호, pp.23-33, 2016.
- [9] 임형진,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방법 분석”, 전자금융과 금융보안 제8호, pp. 10-37, 2017.
- [10] 고태수, 최경진,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처리가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연구용역, 2015.
- [11] 김배현, 권영일, “개인정보 비식별 제도 해외 동향 및 사례”,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p. 88-89, 2017.
- [12] 이인호,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해석론”, 정보법학 제19권 제1호, pp. 59-87, 2015.
- [13] 김선남, 이환수, “개인정보 사후거부 방식 도입을 위한 비식별화 현황 분석”,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 pp. 336-341, 2015.
- [14] FTC, Protecting Consumer Privacy in an Era Rapid Change, Recommendation for Business and Policymakers, 2012

- [15] 이대회,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방안으로서의 가명·비식별정보 개념의 연구”, 정보법학, 제21권 제3호, pp. 1-36, 2017.
- [16] 이소진, 진채은, 전민지, 이조은, 김수정, 이상현, “비식별화 정책 비교 및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방안”, 문화기술의 융합, 제2권 4호, pp. 71-76, 2016.
- [17] 권건보, 이한주, 김일환, “EU GDPR 제정 과정 및 그 이후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제29권 제1호, pp. 1-38, 2018.
- [18] 차상욱, “EU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최근 입법과 시사점”, 정보법학 제21권 제1호, pp. 141-171, 2017.
- [19] 이순환, 박중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법적 문제와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향”, 공법연구 제45집 제2호, pp. 257-287, 2016.
- [20] 고학수, 이동진, 신수용, 박미정, 김은수, 박지훈, “해외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비교·분석”,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보고서, 2018.
- [21] 이창범, “4차 산업혁명과 ICT법의 선진화 방향”, 정보과학회지, pp. 22-33, 2018.
- [22] 국무조정실 외 5개 관계부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2016.
- [23] 구태언, “IoT 시대에 바람직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25권, 1호, pp. 15-23, 2015.
- [24]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18.

[저자소개]



강혜영 (Hye-young Kang)
1993년 2월 서울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
2019년 2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금융보안학과 석사
email : matisse0@naver.com



권헌영 (Hun-yeong Kwon)
2008년 3월~2015년 8월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15년 9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email : khy0@korea.ac.kr